

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2019. 3. 8. 조간용) 보도하여 주시고, 이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 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을 통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지방검찰청

공보담당관 차장검사 이성희
전화 042-470-4302 / 팩스 0502-193-4706

보도자료

2019. 3. 7.(목)

문의 : 특별수사부
전화: 042-470-4305
주책임자: 부장검사 임승철

제 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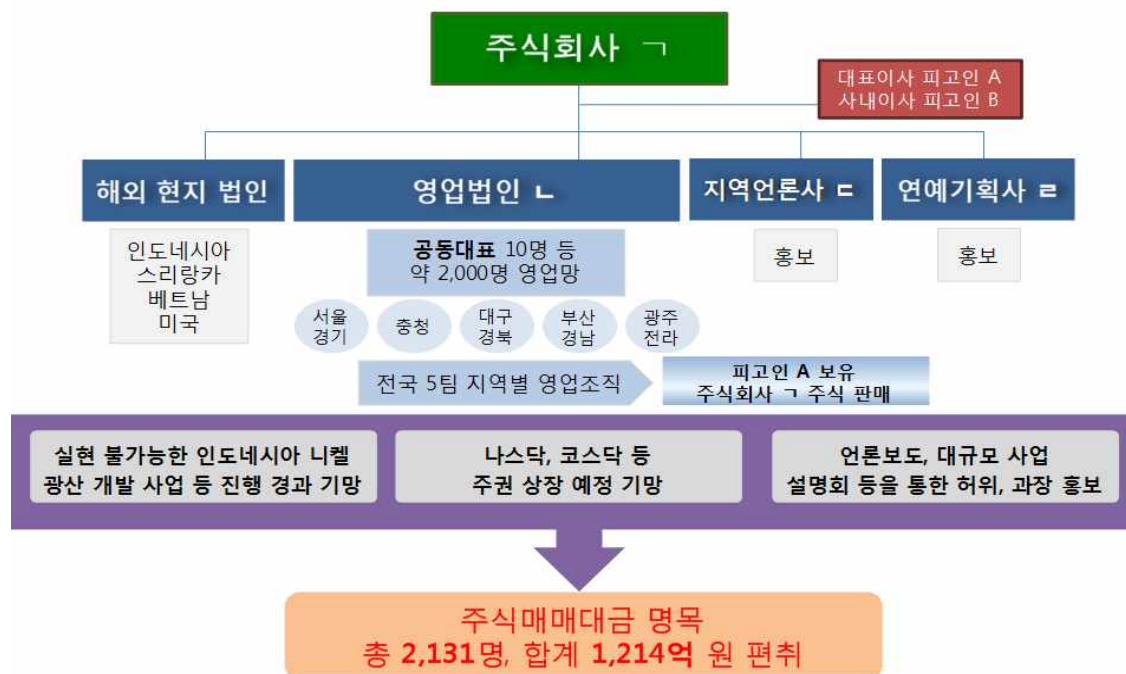
천 억 원대 비상장 주식 사기적 부정거래 사건 수사 결과

- 대전지방검찰청 특별수사부(부장검사 임승철)는, 방문판매 업체인 '주식회사 G'을 운영하면서 '14. 10. ~ '19. 1. 추진사업이 성사 되어 조만간 주권 상장을 통해 엄청난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을 것처럼 허위사실을 홍보, 피해자 2,131명으로부터 주식판매대금 1,214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업체 회장 등 7명을 구속기소 하였음
 - 피고인들은 대규모 해외 개발사업의 실제 확인이 어렵다는 맹점을 이용, 인도네시아 니켈 광산개발 등 사업을 성사시켜 나스닥 등 상장으로 거액의 시세차익을 누릴 수 있다고 허위·과장 홍보하여 서민들의 투자 사행심을 조장하고 다단계 영업조직을 활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주식을 판매함
- 주식 매수 피해자들에 대한 특경가범위반(사기)죄에 더하여, 주식 판매와 관련 부정한 수단을 사용하여 부당이득을 취한 행위를 자본 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로 의율하고, 피고인들이 취득한 범죄수익 중 총 109억 원에 대하여 추징보전 함으로써 범죄수익을 동결함
- 대전지검은 앞으로도, 서민들의 투자 사행심을 교묘히 조장하여 피해를 양산하는 서민다중 피해범죄에 대하여 엄정 대처하겠음

1 피고인 및 범행 개요

- 피고인 A[주식회사 ㄱ 회장], 피고인 B[주식회사 ㄱ 대표], 피고인 C,D,E,F,G[영업법인 ㄴ 공동대표] 등 7명

※ '주식회사 ㄱ'은 대전 서구 둔산동에 위치한 방문판매업체



대표이사 개인 주식을 다단계 영업조직 활용 판매

- 주식회사 ㄱ은 2014. 7.경 발행주식 총수 2만주, 자본금 1억 원에서 시작하여 2017. 11. 1.경 발행주식 총수 4,000만주, 자본금 200억 원에 이르기까지 약 3년 간 35회에 걸쳐 유상 증자하며 이를 모두 대표이사 A에게 발행하고 영업법인 ㄴ을 통해 피고인 A의 개인주식을 판매
- 영업법인 ㄴ은 서울·경기, 충청, 대구·경북, 부산·경남, 광주·전라 등 지역별 영업조직을 기반으로 전국 5팀, 총판 계약자 2,000여 명, 부사장 이상 고위 간부 190명, 공동대표 10명으로 이루어진 전국적 판매망을 구축하였고, 「총판-영업이사-상무이사-전무이사-수석전무이사-부사장-수석부사장-부대표-수석부대표-공동대표」의 10단계 직급체계로 운영

허위의 해외사업을 방송 등 언론을 통해 대대적 홍보

- 피고인들은 현실적으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운 해외 개발사업, 대규모 해외 수출 계약 등이 성사되어 마치 조만간 주식회사 ㄱ의 주식이 나스닥이나 코스닥 상장을 통해 엄청난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을 것처럼 허위·과장 홍보를 하면서 대표이사 A가 임의로 정하는 매도가격에 따라 주식회사 ㄱ의 주식을 판매

(대표적인 허위 홍보 사례는 아래와 같음)

- 피고인들은 천문학적인 비용이 소요되는 인도네시아 니켈 광산 개발 광업 허가권을 취득하여 정상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중국 투자자 4억 달러 투자', '글로벌 기업 1조원 투자 협약', '스위스 투자자 3,700억 원 투자' 등이 확정 되었다는 취지로 대대적으로 홍보 하였으나, 수년 간 1건의 투자도 실현되지 않았고 주식회사 ㄱ이 취득 하였다는 광업 허가권도 유효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확인되는 등 홍보사실이 허위임이 확인됨
- 피고인들은 인도네시아 및 홍콩의 업체에 2,500만 달러의 수소수 발생기 등 제품 수출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홍보 하였으나, 상대 업체의 실체를 확인할 수 없었고 실제 수출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도 않았음
- 피고인들은 3,000억 원 상당의 스리랑카 LED 가로등 교체 사업을 선점 하여 스리랑카 정부로부터 곧 사업자로 확정 발표될 예정이라는 취지로 홍보하였으나, LED 관련 기술력이 전혀 없었고 관련 협약서도 스리랑카 정부가 아닌 단순 컨설팅사와 체결한 것이었으며, 일부 사업은 이미 베트남의 다른 업체가 사업자로 지정된 상황이었음
-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ㄱ의 제품이 제59회 그래미 어워드 시상식에서 '골든 프로덕트 상'을 수상하였다고 홍보하고 대대적인 상패 수여식까지

개최 하였으나, '골든 프로젝트 상'이라는 시상은 존재하지 않는 허구였고 상패는 피고인들이 자체 제작한 것이었으며 이를 인정한 그래미 측으로부터 공식 이의 제기까지 받은 사실이 확인됨

- 피고인 A는 지역 언론사 ㄷ을 인수하여 위와 같은 사업 관련 허위 홍보 기사를 보도하는 등 지역 언론을 사유화하여 범행에 활용하였고, 지상파 TV 방송 광고, 네이버 밴드, 대규모 사업 설명회 등을 통해 대대적으로 홍보 활동을 진행

2 주요 수사 경과

- '18. 8. 20. 서울지방법경찰청, 피의자 18명 자본시장법위반 기소 의견 송치
- '18. 10. 15. 서울중앙지검에서 대전지검으로 이송 (피의자 주거지 관할)
- '19. 1. 2. 주식회사 ㄱ 본사 사무실 등 압수수색
- '19. 2. 20. 피고인 A 등 7명 구속 (사전구속영장)
- '19. 3. 5. 법원, 추정보전청구 인용 (동결 재산 109억 원)
- '19. 3. 7. 피고인 A 등 7명 구속 기소

※ 특경가법위반(사기) 혐의 인정되어 인지·병합 기소하였고, 불구속 피의자 11명은 계속 수사 중임

3 범죄사실

가. 특경가법위반(사기)

-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상습으로 2014. 10.경부터 2019. 1.경까지 네이버 밴드, 언론보도 등을 이용하여 해외 사업들이 조만간 성사되어 나스닥에 상장될 것처럼 허위 홍보를 하면서 주식회사 ㄱ 주식을 판매하여 피해자 2,131명으로부터 주식대금 명목으로 함께 1,214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

나. 자본시장법위반(사기적 부정거래, 미신고 모집·매출)

- 위와 같이 금융투자상품인 주식회사 ㄱ의 주식 매매와 관련하여 위계를 사용함으로써 1,014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
-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총 2,131명에게 주식회사 ㄱ 주식을 판매

4

수사 결과

- 피고인 및 관련자에 대한 계좌 추적을 통하여 피해 규모를 특정하고, 본사 사무실 및 주요 피고인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공모 관계 및 사업 홍보 내용의 허위성을 규명함
- 피고인별 범죄사실 요지 및 처분 결과 : [별첨] 참조
 - 주범인 주식회사 ㄱ의 회장과 대표, 범행에 깊숙이 관여하고 수당 등 명목으로 범행수익을 공유한 영업법인 ㄴ의 공동대표 5명 등 핵심 인물 7명을 구속 기소하였음
 - 피고인들의 여죄 및 나머지 관련자들에 대하여는 추가 수사 진행 중
- 기소 前 범죄수익 추정보전
 - 피고인들 계좌 137개, 토지 3필지, 건물 7동 등에 대하여 기소 前 추정보전 청구를 하여 109억 원 상당의 재산을 동결함으로써, 범죄수익 은닉을 봉쇄하였고 향후 범죄수익 환수에 만전을 기할 예정임

5

향후 계획

- 대전지방검찰청은 앞으로도, 본건과 같이 일반 국민들의 투자 사행심을 조장하고 서민들에게 피해를 양산하는 대규모 금융경제범죄나 서민다중 피해사범에 대하여 엄정 대처할 계획임. 끝.

[별첨]

순번	피고인	직책	범죄사실 요지	처분
1	A○○	주식회사 ㄱ 회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식매매대금 1,214억 원 편취 •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로 부당이득 1,014억 원 취득 • 금융위원회 미신고 증권 매출 	3. 7. 구속기소
2	B○○	주식회사 ㄱ 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식매매대금 1,214억 원 편취 •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로 부당이득 1,014억 원 취득 ※ 주식판매영업 총괄 	3. 7. 구속기소
3	C○○	영업법인 ㄴ 공동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식매매대금 1,208억 원 편취 가담 •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로 부당이득 1,008억 원 취득 가담 ※ 부산지역 영업조직 관리 	3. 7. 구속기소
4	D○○	영업법인 ㄴ 공동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식매매대금 1,138억 원 편취 가담 •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로 부당이득 938억 원 취득 가담 ※ 충청지역 영업조직 관리 	3. 7. 구속기소
5	E○○	영업법인 ㄴ 공동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식매매대금 1,208억 원 편취 가담 •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로 부당이득 1,008억 원 취득 가담 ※ 경기지역 영업조직 관리 	3. 7. 구속기소
6	F○○	영업법인 ㄴ 공동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식매매대금 1,208억 원 편취 가담 •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로 부당이득 1,008억 원 취득 가담 ※ 경북지역 영업조직 관리 	3. 7. 구속기소
7	G○○	영업법인 ㄴ 공동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식매매대금 1,168억 원 편취 가담 •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로 부당이득 968억 원 취득 가담 ※ 부산지역 영업조직 관리 	3. 7. 구속기소

※ '공동대표'는 대표권을 표상하는 것이 아니고 다단계 조직상의 직책임